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18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진행순서 |

개회식

개회사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문희상	국회의장
축사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발제 및 토론

사회	신울	명지대학교 교수
발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토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홍인기	대구대학교 교수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Contents |

개회사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7
격려사	문희상	국회의장	11
축사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15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19
발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1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39
토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1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3
	김성식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65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67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69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71
	홍인기	대구대학교 교수	79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회사

김 춘 순

국회의산정책처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김광림·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자로 나와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김성식 간사님, 그리고 유성엽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신 신율 교수님과 발제를 해 주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님, 그리고 토론에 나서 주실 박기백 교수님, 홍인기 교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조세지출을 강화하였고, 부동산 등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시 조세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지원, 그리고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 등 의원발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누면서,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정성호 위원장님, 김광림·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님, 김정우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김성식 간사님, 유성엽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박기백·홍인기 교수님, 그리고 미처 소개 못 드린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격려사

문희상

국회의장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조세 전문가를 비롯한 모든 분께도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세수입은 빠르게 개선되며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경제여건 상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고용지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 것도 현실입니다. 세입 측면에서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오늘날 조세는 정부의 재원조달 수단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조세가 가지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안정화 기능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는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오늘 토론회는 조세정책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재원 분담 문제를 고민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목표를 두고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는 단년도 세법개정안 검토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적 구조변화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세제개편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가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회의장 **문희상**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축사 1

정 성 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토론회 준비에 많은 정성을 쏟아주신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경제재정연구포럼 김광림·장병완 공동대표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일자리 창출 여력 약화와 성장률 둔화로 국민들의 체감 내수경기는 악화일로입니다. 대외 불안 요인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한미 금리 역전 영향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입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국가 재정 부담도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민관 모두가 경제 활성화와 펀더멘탈 강화에 각별히 힘을 쏟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가(官家)는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46.3%는 국회와 정치권이 한국경제 어려움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3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정치권 모두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논의부터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조세정책 설계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수 기반 확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세법은 국가 재정의 뼈대인 만큼 당리당락을 떠나 오직 국민과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세법 개정안을 활발히 발의해 주셨습니다. 각론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우리 조세제도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합리적인 대안 도출에 지혜를 모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관점과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격려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정 성 호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축사 2

김 광 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1

김 병 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18년 세법개정안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
”



0

CONTENTS

1. 조세운용여건,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2.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3. 세수효과 및 세부담귀착

1

2018년 세법개정안

- 조세 운용 여건
- 추진 배경
- 기본 방향

2

조세 운용 여건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OECD: 25.1
한국: 20.4

- '14년 이후 상승 → '16년 19.4% → '21년 20.4% 전망
-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25.1%보다 낮은 수준

세목별 비중 (17년 기준)

총국세 265.4조원

- 소득세 (75.1조원, 28.3%)
- 부가가치세 (67.1조원, 25.3%)
- 법인세 (59.2조원, 22.3%)
- 관세 (8.5조원, 3.2%)
- 개별소비세 (9.7조원, 3.7%)
- 교통·에너지·환경세 (15.6조원, 5.9%)

국세수입 실적 (조원)

2013: 201.9, 2014: 205.5, 2015: 217.9, 2016: 242.6, 2017: 265.4, 2018: 288.1, 2019: 299.3, 2020: 312.7, 2021: 325.7, 2022: 340.3

국민부담률 (%)

2008: 24.8, 2013: 24.3, 2016: 25.2, 2021: 28.3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3대 세목 비중은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순서

(14년 이후 지속)

- ▶ [소득세] '09년 금융위기로 일시 하락 후 **완전히 상승추세**
- ▶ [부가가치세]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나 자량소비세 야망 등에 따라 소폭 하향추세
- ▶ [법인세] '15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16년 이후 **비중 증가추세**

■ '19년 국세수입은 **299,3조원** 으로 전망 (예산안)

※ 총수입총지출 추이 (조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수입	352	356	372	402	431	448	481	504	525	547
지출	338	348	372	385	407	429	471	505	536	568

기획재정부 세제실 3

조세 운용 여건

세수추계 개선

현황

- 우리나라 세수추계 정확성은 해외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초과세수 연속적으로 발생
 - ▶ 세수추계 오차(%) : ('12) △1.3 ('13) △6.7 ('14) △5.1 ('15) △1.5 ('16) 8.8 ('17) 9.5
 - ▶ 10년평균 오차(%) : (한국) 4.7 (미국) 7.5 (일본) 7.8 (영국) 2.2 (독일) 3.1 (호주) 5.5

'19년 세입예산안 편성

- '19년 세입예산안 : 그간의 보수적 추계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으로 편성**
 - ▶ '19년 세입예산 증가율(%) : 11.6%,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수준

향후 개선방안

- 「세수추계 TF」 등을 통해 국세청, 관세청, 조세연구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 지속 개선·보완
- 세수추계 정보 공개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4

2018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추진정책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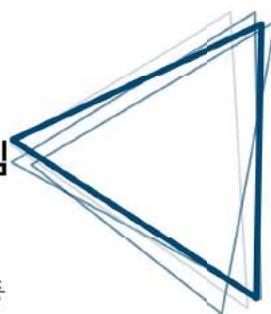
청년일자리대책('18.3월)
지역 대책(4월)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등
주요대책

외부수요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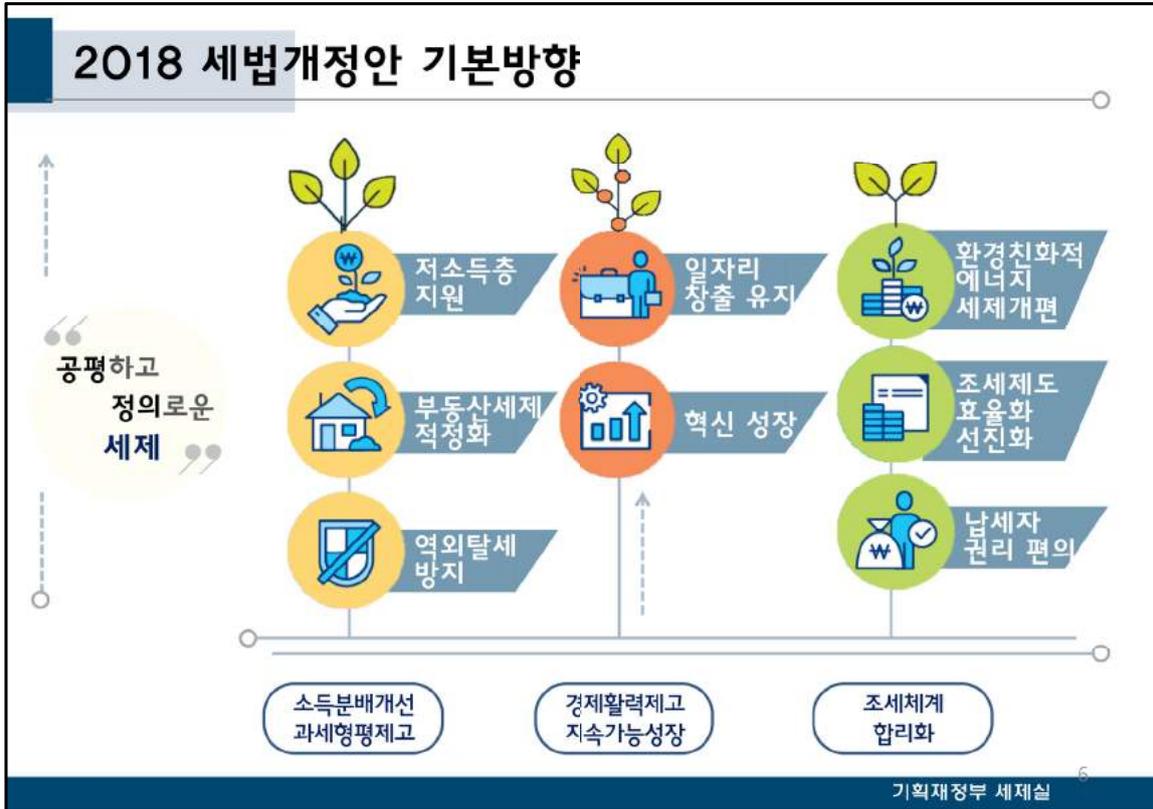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및
관계부처 등의 개정건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T/F의 권고사항
공청회, 관계실국간 토론회 개최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

소득재분배,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 성장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 5



2

주요 세법 개정안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조세체계 합리화

7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

대상 확대

재산요건 1.4억 미만 ⇨ 2억 미만

연령요건 (단독가구) 30세 미만 배제 ⇨ 수급 가능

소득요건

1,300 ~ 2,000 만원 미만	2,100 ~ 3,000 만원 미만	2,500 ~ 3,600 만원 미만
단독	혼벌이	맞벌이

혜택 확대

최대지급액

85 ⇨ 150 만원	200 ⇨ 260 만원	250 ⇨ 300 만원
----------------	-----------------	-----------------

최대지급기간

600 ⇨ 400 ~ 800 만원	900 ⇨ 700 ~ 1,400 만원	1,000 ⇨ 800 ~ 1,700 만원
단독	혼벌이	맞벌이

지급 방식

시기·주기 다음연도 연 1회
⇨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연도 연 2회

효과 : 대상인원 및 지원규모

- + 168만 가구
- △ 2.6 조원

168만 가구

1.2조원 지원

현재('17년)

334만 가구

3.8조원 지원

제도 확대 시

“ 근로유인 제고 ·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

기획재정부 세제실 8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저소득층 지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 지급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 지급액 : 자녀 1인당 30~50 만원 → 50~70 만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 1일 10만원 → 15만원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월)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교액 기준 금액 인하** : (현행) 기부금 2천만원 이하 : 15% 공제, 2천만원 초과 : 30% 공제
(개정)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공제, 1천만원 초과 : 30% 공제
- 지정·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 : 5년 → 10년
 - 지정기부금 :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법정기부금 : (개인) 100%, (법인) 50%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 : 10% → 30%

기획재정부 세제실 9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부동산세제 적정화

* 「중부세 개편방안」 ('18.7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 ('18.9.13.)

• [종합부동산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100% (22년까지 연5%p씩 인상)

세율

	현행	개정안				
주택	0.5 ~ 2%	<table border="1"> <tr> <td>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 + 2주택</td> <td>0.5 ~ 2.7%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0.2~0.7%p인상</td> <td>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3주택 이상</td> <td>0.6 ~ 3.2% 전 구간 +0.1~0.6%p 추가인상</td> </tr> </table>	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 + 2주택	0.5 ~ 2.7%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0.2~0.7%p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3주택 이상	0.6 ~ 3.2% 전 구간 +0.1~0.6%p 추가인상
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 + 2주택	0.5 ~ 2.7%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0.2~0.7%p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3주택 이상	0.6 ~ 3.2% 전 구간 +0.1~0.6%p 추가인상			
종합부동산소득지	0.75 ~ 2%	0.25 ~ 1%p 인상				
별도부동산소득지	0.5 ~ 0.7%	(좌 동)				

주택 세부담 상한
150% ⇨ 30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3주택 이상)

* **종합부동산세액**
= [(공시가격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과세표준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

- 총 인상대상 : 34.9만명
- 세수효과 : + 1.2조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10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부동산세제 적정화

* 「중부세 개편방안」 ('18.7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 ('18.9.13.)

• [종합부동산세 개편]

당초 정부안 보다 강화된 수정안 발표 이유?

- 정부는 다음 원칙에 따라 중부세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8.31)
 - 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
 - ② 자산과세 특성, 시장의 영향을 감안한 점진적 개편
 - ③ 거래세 일부 부담 완화, 중부세 수입은 전액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
-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단기간 이상 과열로 인한 시장불안 확산
 -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협
-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 주거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형평 제고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려는 것

주택분 중부세 수정내용

- ▶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80% ⇨ 연 5%p씩 100%까지)
- ▶ 과표3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1주택 보유자 세율인상 (현행 대비 +0.2 ~ 0.7%p)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추가과세 (현행대비 +0.1 ~ 1.2%p)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150% ⇨ 300%)

기획재정부 세제실 1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부동산세제 적정화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전환 : (~'18년) 비과세 → ('19년~) **분리과세**
-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 적용 : 60% →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
 * 분리과세 산식 = [총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14%
-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 차등 조정 : 400만원 → (등록사업자) **현행유지**, (미등록사업자) **200만원**
- 임대보증금 과세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 : 3억원 & 60m²이하 → 2억원 & 40m²이하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역외탈세 방지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 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 처분시 신고의무 신설
-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
- 미신고 자 소명 의무 신설

현행	개정안
모든 해외부동산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임대· 처분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취득가액의 10% (1억원 한도)

+ 미신고자 소명 의무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확대]

- 부과 대상 :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 과태료 금액 : (개인) 300만원 → **500만원**
 (법인) 500만원 → **1,000만원**
- 미신고 자 소명 의무 신설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 : (무신고) 7 → **10년** (과소신고) 5 → **10년**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비과세감면 정비

*** 상호금융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업의 지역직장조합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조정]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	[현재]	(~'18년) 비과세 ('19년) 5% 분리과세 ('20년~) 9%분리과세
	↓	
	[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조합원·회원</div> (~'21년) 비과세 ('22년) 5% 분리과세 ('23년~) 9%분리과세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준조합원</div> (현재와 동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 '19.7월 시행

-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 부과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가상통화거래소) 세액감면 제외]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세제실 14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유지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목포시, 고성군, 영암군, 해남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9개)

[위기지역 세제지원]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 ('18.4월)

- 위기지역 **창업(사업장신설) 신규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설 : 5년간 100%**

[지역특구 감면제도 재설계]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18.7월) * 일몰연장 3년

-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 커지도록 **감면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현행) 투자액 50% + min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투자액의 20%] → (개정) 투자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천만원 (청년2천만원)]

* (예시) 제조업 영위 기업이 120억원 투자, 100명 (청년 50명) 고용 하여 공장 신설시 감면한도 : 70억원 → 77.5억원

[고용중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청년일자리 대책」 ('18.3월)

- 공제기간 확대 : (중소중견기업) 2년 → 3년, (대기업) 1년 → 2년
-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 추가 공제
 - (중소·중견) 임금수준 및 청년근로자비중 높은 기업, 청년의 근무여건 우수기업
 - (대 기 업) 청년고용증가율이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청년일자리 대책」 ('18.3월) * 일몰연장 3년

- 부분복귀 세액감면 대상 : 중견·중소기업 → 모든기업(대기업포함)

기획재정부 세제실 15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혁신 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18.10월)

↳ *감가상각 기간을 ½ 단축

- 중소·중견기업 : 유형과 무관한 사업용 투자 자산
- 대기업 : 혁신성장 관련 투자 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 ('18.5월)

-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확대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추가
* 블록체인 보안-네트워크-플랫폼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등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완화 : 매출액대비 R&D비용 비중 5% 이상 → **2% 이상** * 일몰연장 3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 소득세 비과세한도 확대 : 연 300만원 → **500만원**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 2년간 50% → **5년간 50%**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투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16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등]

- 대상 :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 공제한도 인상 : 한시적('20년), 500 → **700만원**
- 우대공제율(1.3/2.6%) 기간 연장 : '18년 → **'20년**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 인상]

- VAT 납부의무 면제기준 : 연매출 2,400 → **3,000 만원**

[성실사업자에 대한 주택월세 세액공제]

- 대상 : 무주택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
- 주택월세액의 10 ~ 12%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세제실 17

조세체계 합리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발전용 유연탄· LNG 제세부담금 조정]

-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제세부담금 조정 : **유연탄 ↑ , LNG ↓**
 - 미세먼지 관련물질(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반영한 비용
 - 발전용 유연탄 : LNG = 85원/kg : 43원/kg

제세부담금 : [유연탄] 36원/kg : [LNG] 91.4원/kg = **1 : 2.5**

↓

[유연탄] 46원/kg : [LNG] 23원/kg = **2 : 1**

기획재정부 세제실 18

조세체계 합리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면세점 제도 개선]

-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 만료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대기업) 0 → 1회, (중소·중견) 1 → 2회
-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정책 심의기구 설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18.7월)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개선]

-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 차등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 초과	80% 초과	100% ⇨ 100%
30 ~ 40%	50 ~ 80%	80% ⇨ 90%
20 ~ 30%	40 ~ 50%	80% ⇨ 80%

기획재정부 세제실 19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불성실가산세 & 가산금 : **인하 및 통합운영**

	'19년	'20년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0.03 → 0.025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가산금	월 1.2 → 0.75 %	일 0.025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 **가산세 전환 및 처벌수준 적정화** (거래대금의 50 → 20%)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 세무공무원 및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의 녹음 가능
- 세무공무원은 녹음시 **납세자에 사전통지** 및 납세자 요청시 **사본교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주요 세제개정 추진사항

유류세 한시적 인하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18.10.24.)

* 국무회의 의결 ('18.10.30.)

- * 유류세 : (휘발유·경유) 교통세 + 주행세 + 교육세
(LPG 부탄) 개별소비세 + 교육세

내용

인하율 15 % 인하

기간 한시적, '18.11.6. ~ '19.5.6.

효과

가격인하 요인 발생

: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

주요 수혜 대상

: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

2018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주요 세제개정 추진사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18.9.27.)

배경

- **국민불편 해소**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 해소
-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주요 내용

단계적 도입·운영

- ▶ 인천공항 시범운영·평가(6개월) 이후 본격 시행 — 이후 전국 주요공항 확대
- ▶ 담배 및 검역대상품목 등 판매제한, 1인당 판매한도 600불 (현행 휴대품 면세한도) 유지

세관·검역 등 기능보완

- ▶ 입체감시 강화(CCTV설치·순찰감시 등), 이용자 별도통로 운영 등 세관검사 효율화
- ▶ 검역탐지견 추가배치, 검역 상습위반자 정보 사전수집·활용 등 검역기능 보완

중소·중견기업 혜택 등

- ▶ 운영업체 : 중소·중견기업 한정, 제한경쟁 입찰 추진
- ▶ 면세점 임대수익 활용 :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 활용

계획

- '19.5~6월 까지 입국장 면세점 설치·운영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22

2018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주요 세제개정 추진사항

지방소비세율 확대

* 「재정분권 추진방안」 ('18.10.30.)

*** 재정분권 단계적 추진**

	1단계('19~20년)	+	2단계('21~22년)
재정분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율 확대 ▪ 중앙정부 기능이양 ▪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제도 근본적 개편 ▪ 지방세 추가확충 ▪ 중앙정부 기능이양 ▪ 지방교육재정 개혁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지방 권한·기능·재원 대폭강화

***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비세율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수 × 11%

현행	'19년	'20년
11%	15% (+4%p)	21% (+6%p)
	3.3조원	5.1조원

“지방세 누적 11.7조원 확충”

기획재정부 세제실 23

다국적 IT기업 과세(구글세) 논의동향

과세
현황

- 앱마켓 수익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가 국외 소재)이 없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
 - * 앱마켓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중('14년 세법개정)
- 국내자회사(구글 코리아 등)의 광고수입 등에 대해서는 정상과세 중

주요
국제
동향

- OECD, EU 중심 으로 디지털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 등 과세방안 논의 중
 - * (단기적 조치)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EU안 : 3%)
 - * (장기적 조치) 중요한 디지털 실재 등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
- 영국, 스페인 등에서 독자적으로 단기적 조치 도입 방안 발표('18.10월)
 - * EU·OECD의 디지털세 합의도출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상원은 EU측에 국제 통상 · 조세분쟁 가능성 경고('18.10월)

대응
방향

- EU 등 단기대책 관련 동향 계속 주시, OECD의 장기대책 도출을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 * 단기대책 고려사항 : ①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복과세 ②소비자 전가 및 부가가치세와 중복
 - ③소득 기반 과세 원칙 ④ 미국과의 통상 · 조세분쟁 가능성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세 수 효 과

+ 정부 세법개정안 제출 이후, 추가대책발표에 따른

2019 세수효과 전망액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중부세 강화	+0.3조원
▶ 10.24 혁신성장 지원방안 :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	△1.4조원
▶ 10.30 재정분권 추진방안 : 지방소비세 4%p 인상	△3.2조원
	△4.4조원

☑ * 「자영업자 지원대책」('18.8.22) 세수효과 포함

☑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 향후 5년간 △ 2.7조원
('19년 △ 3.4조원)

- **증가 요인**
 - : 종합부동산세 개편 (+ 0.9조원), 조합예탁금 등의 저율분리과세 전환 (+ 0.3조원), 등
- **감소 요인**
 - : 근로장려금 (△ 2.6조원) · 자녀장려금 (△ 0.3조원) 확대
고용증대세제 확대 (△ 0.5조원), 가산세율 개편 (△ 0.2조원), 등

26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 부 담 귀 착

0.72조 ↑
고소득자 /
대기업

**서민·중산층 /
중소기업**
3.26 조 ↓

☑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감소하고(△3.26),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증가(+0.72)

27
기획재정부 세제실

감 사 합 니 다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2

정 문 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18년 세법개정안 분석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Contents

- I. 중기 경제 · 재정여건
- II. 2019년도 세입전망 및 2018년 세법개정안 분석
- III. 주요 세목별 분석
- IV. 향후 과제



I

중기 경제 · 재정 여건

I-1. 경제여건

202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추세적으로 저하될 전망

○ 잠재성장률: ('11~'17년) 3.0% → ('18~'22년) 2.7% → ('27년) 2.4%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중기 잠재GDP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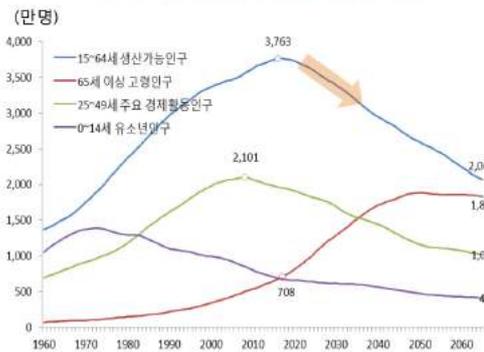
자료 : IMF, Economic Outlook('18.10.), NABO,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I-1. 경제여건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기초한 구조적인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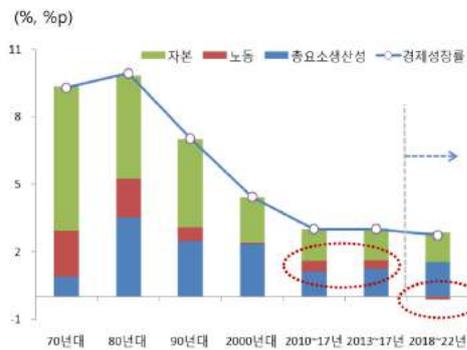
- 2017년부터 고령사회 진입, 출산율 하락세 지속 → 노동기여도 감소세 전환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



자료 : NABO,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 및 전망



I-2. 재정여건: 재정수지

NABO 10년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 →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악화 추세

통합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자료 : NABO,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분석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추이 및 전망



I-2. 재정여건: 지출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의무지출 확대 추세

- 2018년부터 의무지출 규모가 재량지출 규모를 상회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율 > 전체 의무지출 증가율)



I-2. 재정여건: 세입

2019년 이후 경제의 성장세 저하에 따라 국세수입 신장성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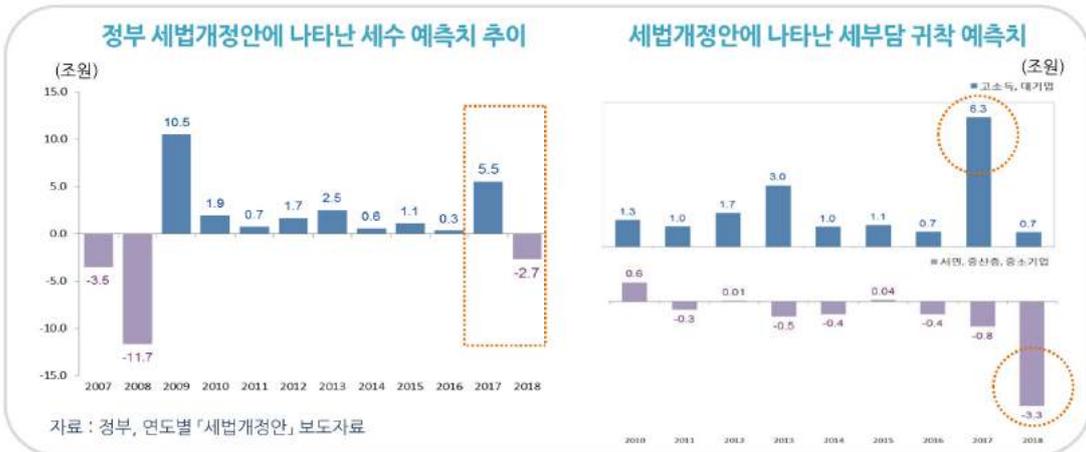
- 명목GDP 증가율 하락, 국세수입 증가율 4%대 하락 → 국세수입 탄성치 하락



I-3. 정부의 최근 조세정책 기조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 예측치 : 증가('09~'17년) → 감소('18년)

- 고소득·대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세수증가 요인): 2013년, 2017년
- 중·저소득층 지원 강화(세수감소 요인): 2017년, 2018년



II

2019년도 세입전망 및 2018년 세법개정안 분석

II-1. 2019년도 총수입 전망

NABO 전망: 총수입 483.7조원(국세수입 302.6조원, 국세외수입 181.1조원)

○ 정부세입예산안: 총수입 481.3조원(국세수입 299.3조원, 국세외수입 182.0조원)



II-2. 2019년도 국세수입 전망

NABO 전망: 국세수입 302.6조원(전년도 289.9조원 대비 +12.7조원)

- 법인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양호한 흐름 예상, 2018년 세수호조 반락효과와 실물경기 둔화로 증가추세는 감소할 전망(9.2%→4.4%)
- 정부세입예산안 299.3조원 대비 3.3조원 상회할 전망

(조원)

	2018 NABO 전망(A)	2019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대비 증감액(C-A)	예산안 대비 차이(C-B)
총국세 (증가율)	289.9 (9.2%)	299.3	302.6 (4.4%)	12.7	3.3
소득세	81.8	80.5	83.1	1.3	2.6
법인세	69.6	79.3	77.9	8.3	-1.3
부가가치세	70.0	72.2	72.9	2.8	0.6
증권거래세	6.4	4.5	5.0	-1.5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8	15.7	0.4	-0.1
종합부동산세	1.8	2.6	2.8	1.0	0.2

자료 : NABO,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II-3. 2018년 세법개정안 특징

올해 세법개정안은 EITC · 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 · 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강화

II-4. 2018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향후 5년('19~'23년) 세수효과는 총 1.7조원 세수감소 전망
소득세 -2.6조원, 법인세 - 0.5조원, 기타 세목 +1.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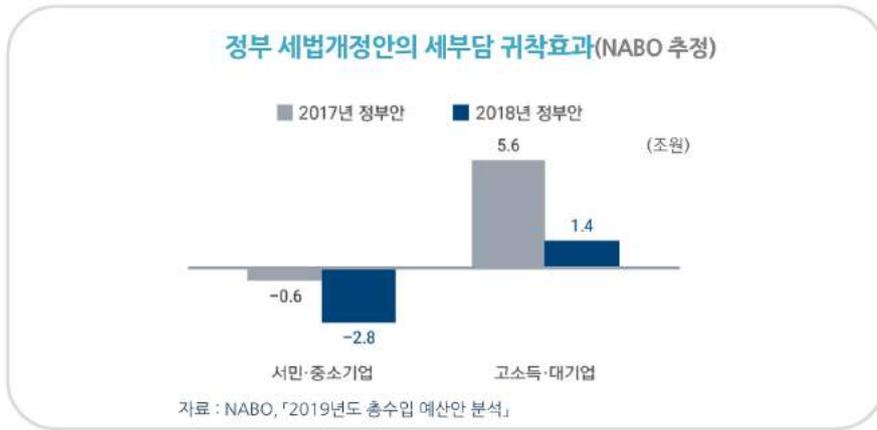
		(조원)		
		NABO(A)	정부(B)	A-B
합계	주요 항목	-1.7	-2.7	1.0
소득세 (-2.6조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12.8	-15.7	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0.4	추정근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0.1	-	*
법인세 (-0.5조원)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1.3	-1.4	0.0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0.5	-0.4	-0.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비 세액공제 등 일몰연장	-0.8	-0.4	-0.4
기타 (1.4조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세부담 한도 상향	6.5	4.4	2.1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0.5	1.1	-0.6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일몰연장	-0.8	-1.2	0.4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	4.5	4.7	-0.2

자료 : NABO,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II-5. 세부담 귀착효과: 수혜계층별

저소득층 지원 확대

○ 5년('19~'23년) 연평균 세부담: 서민·중소기업 2.8조원 감소, 고소득층·대기업 1.4조원 증가



II-6. 세부담 귀착효과: 수혜계층별·세목별

서민·중산층 세수효과(-2.8조원)의 대부분은 소득세 부문(-2.6조원)에서 발생, 고소득층·대기업 세수효과(+1.4조원)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기타 부문에서 발생





Ⅲ

주요 세목별 분석

Ⅲ-1. 소득세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 → 중·저소득층 조세지원 확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정안

제도 개정

- 최고세율 인상(35% → 38% → 40% → 42%)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14년)
- 금융소득 종합소득 기준금액 인하('13년)

- EITC, CTC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특징

-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
- 소득세수: 2012년 45.8조원 → 2018년 81.8조원
(전년대비 연평균 +5.6조원, '12-17년: 실적, '18년: 전망)

-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전년대비 1.3조원
- 세수효과: -3.3조원

조세 지출

- 감면 확대
- 2012년 15.3조원 → 2018년 23.5조원
(기간 중 +8.2조원)

- 감면 확대
- 28.7조원(+5.2조원)

자료 : NABO,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등을 토대로 작성

III-1. 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세수효과)

EITC · CTC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

2019~2023년 동안 NABO 12.8조원, 정부 15.6조원의 세수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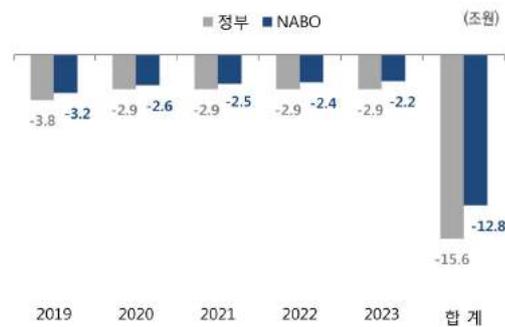
- EITC : 연령요건 폐지, 소득요건 상향, 재산요건 완화
- CTC : 지급액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수급자 지급대상에 포함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현행(2018)	정부안
연령요건	30세이상	폐지
소득요건 (단독/홀벌이/맞벌이)	1,300/2,100 /2,500만원	2,000/3,000 /3,600만원
재산요건	1.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단독/홀벌이/맞벌이)	85/200/250만원	150/260/300만원
최대지급액 구간	600~1,300만원	400~1,700만원
지급시기	다음연도 1회	당해연도 반기별(2회)

자료 : NABO,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개정안 세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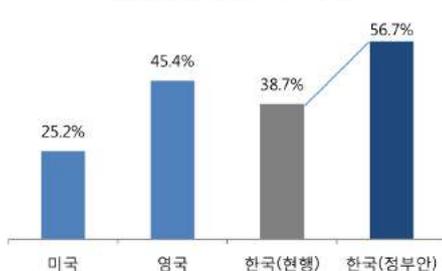
III-1. 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2018년 세법개정안의 근로장려금은 미국과 영국을 상회하는 수준
제도 확대의 공론화, 향후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등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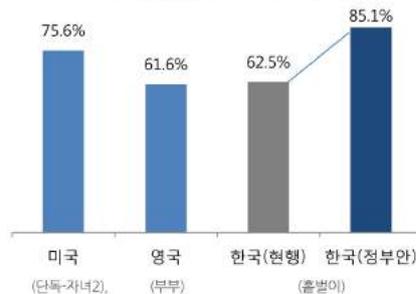
- EITC 수혜가구 수 : 169만 가구 → 324만 가구
- 소득보전효과(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기존 수혜가구 15.5~20.7%, 신규가구 3.1~3.7%

근로장려세제 지급기준(소득상한) 국제비교

단독가구(1인당 GDP 대비)



부부가구(1인당 GDP 대비)



자료 : NABO,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III-1. 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강화)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전환이 내년 최초 시행될 예정(기 발표, 2017.12.)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필요



III-1. 소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부 확대)

1999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정책목표 추가로 다수의 추가공제 신설
 과표 양성화 효과를 고려해 향후 단계적 폐지 검토 필요



III-2.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한 대규모 법인의 세부담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형 조세지원 확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2018년 개정안

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18년, 200억원 초과 22%→3천억원 초과 25%) •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15년), 고용증대세제 도입('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대세제 확대 • 신성장 R&D 확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촉진 → 일자리지원 정책기조 변화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법인세 소득재분배 • 법인세수: 2012년 45.9조원 → 2018년 69.6조원 (전년대비 연평균 3.5조원, '12-'17년: 실적, '18년: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지원 확대 기조 • 전년대비 8.3조원 • 세수효과: -0.2조원
조세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축소 • 2012년 8.5조원 → 2018년 7.4조원 (기간중 -0.9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축소 • 7.0조원(-0.4조원)

자료 : NABO,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등을 토대로 작성

nabO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1

III-2. 법인세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기업의 신규 고용 1인당 노동비용은 0.3~7.9% 감소 예상

- (일몰연장) 고용증대세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1년말까지)
- (지원확대) 청년친화기업 공제액 확대(+500만원), 공제적용 기간 1년 연장(총 3년, 대기업 2년)
- ※ 청년친화기업 : 기업 청년고용증가율이 평균 이상이거나,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

신규채용 1인당 임금비용 변화 (만원)

■ 개정전 ■ 개정후

기업 유형	개정전 (만원)	개정후 (만원)	변화율 (%)
중소기업	12,737	11,737	-7.9%
대기업	66,862	66,67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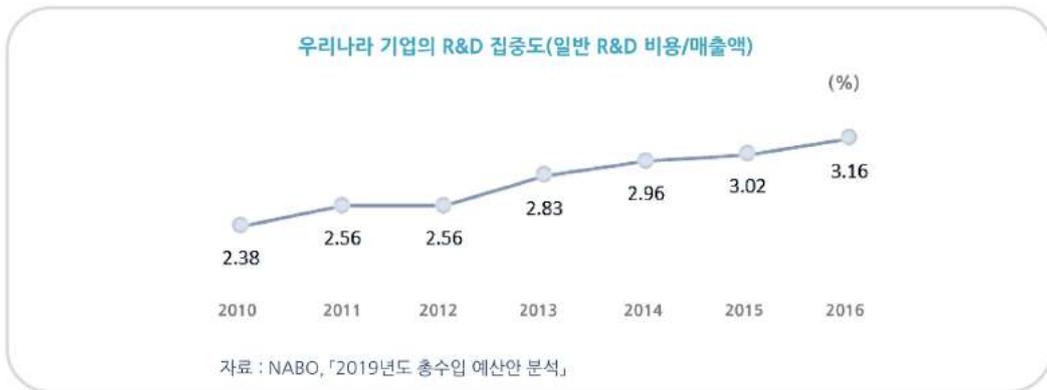
자료 : NABO,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nabO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2

III-2. 법인세 (신성장기술투자 세제지원 확대)

사후적 신기술 지정방식 및 세제지원 요건의 경직성은 제도 효과의 제약요인

- (신기술 지정방식) 심의신청 및 평가에 6개월 소요
- (적용요건) 개정전 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 개정 후 2%
 - ※ 2010년 이후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평균비중 2.8% (단, 세법상 범위<기업회계상 범위)



III-3. 소비세

신규세원 발굴 → 에너지세제의 환경세 기능 강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정안
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및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정비(+고급가방, - 녹용/고급사진기 등) • 발전용유연탄 과세('14년), 담배 개별소비세 과세('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용 유연탄, LNG 세율조정 (36→46원/kg, 60→12원/kg) •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연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등 소비세 활용을 통한 교정기능 강화(유연탄, 담배) • 부가가치세수: 2012년 55.7조원 → 2018년 70.0조원 (전년대비 연평균 2.6조원, '12-'17년: 실적, '18년: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기초 • 전년대비 2.9조원 • 세수효과: -0.17조원
조세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확대 • 2012년 7.3조원 → 2018년 8.6조원 (기간중 +1.3조원, 부가가치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확대 • 9.1조원(+0.5조원)

자료 : NABO,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등을 토대로 작성

III-3. 소비세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

발전용·운송용 에너지의 환경비용을 감안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해당

- 목적세로 도입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존속 필요성, 향후 운영방향 제시 미흡
- 기존 발전설비 용량을 감안할 때 발전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효과는 제한적



III-4.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 및 폐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완화 유지 → 양도소득세 증과(기 시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자료 : NABO,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등을 토대로 작성

III-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인상

-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 '18년 80% → '19년 85% → '20년 이후 90%
- 세율 : 주택(6억원 초과) 및 종합합산토지 기본세율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 0.3%p 추가과세
- ※ 정부안 이후 9.13.후속대책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인상, 다주택자 세율 등 추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자료 : NABO,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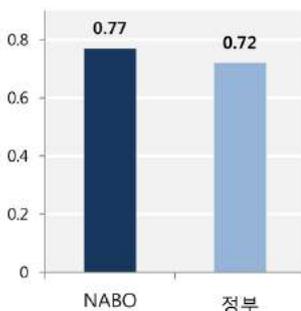
* 실거래가 환산: 1주택 23억원, 다주택 19억원

III-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세수효과)

NABO는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를 0.77조원으로 추정(정부추계치 0.72조원)

- 2019년 종합부동산세수는 2.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7년 2.4조원을 상회하는 수준
- ↳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인원 증가효과를 NABO는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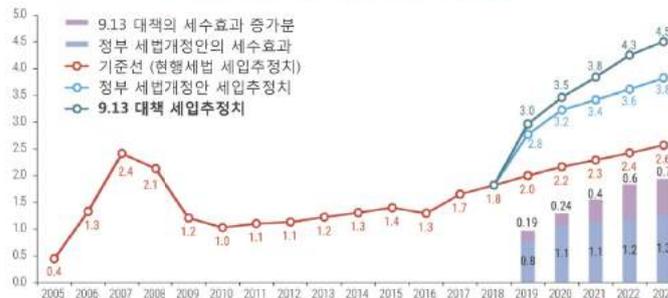
2019년 세수효과 비교 (조원)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포함하면 2019년 세수효과는 0.93조원(NABO 추정)

자료 : NABO, 「종합부동산세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종합부동산세 세입전망치: 2019~2023년 (조원)



III-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효과)

1세대 1주택 실거래가격별 세부담 효과

1. 정부 세법개정안

- 시가 13억원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정부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소폭 상승 (적용대상 6.9만명)

- 시가 23억원 주택부터 세율인상 적용(적용대상 5천명)

2. 정부 9.13대책

- 시가 18억원 주택부터 세율인상이 적용되어, 정부안 대비 세율인상구간 5억원 감소 (적용대상 1.6만명)

9.13 대책에 따른 주택 보유세 부담액: 1세대 1주택, 실거래가격별



III-5. 조세지출 (현황)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47.4조원으로 2018년 대비 13.1% 증가
 2019년 국세감면율은 13.7%로,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 13.8%에 근접할 전망

- 조세지출 연평균 증가율: ('14~'17년) 4.3% → ('17~'19년) 9.3%

조세지출 증가 추이 (조원)



자료: NABO,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추이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액 + 국세감면액)) × 100
 법정한도: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국가재정법」 제88조)

III-5. 조세지출 (평가 및 정비)

(예비타당성조사) 조세지출 확대규모가 큰 근로장려금 확대안에 대한 사전평가 필요

↳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효과 집계에도 미반영

정비실적: 세수감소효과, 전년대비(조원)



* 2019년 기준

* 연간 조세감면액(기존 제도변경 시는 추가되는 감면액 기준)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조세특례 신규도입안 및 당해연도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시행령 제135조)

자료 : NABO,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심층평가) 대부분 축소 재설계안으로 권고 되었으나, 15건 중 2건에 한해 반영

↳ 일몰도래 88건의 정비효과 401억원

* '14~'17년 평균: 4,568억원

심층평가 결과: 전년대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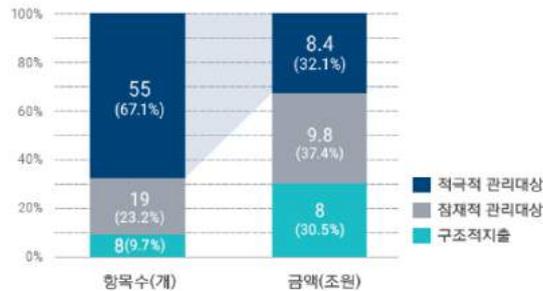
III-5. 조세지출 (평가 및 정비)

주기적 평가가 곤란한 일몰없는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 중 약 30%인 82개 항목

↳ 일몰없는 항목 중 정부가 정비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적극적 관리대상” 비중이 높아

일몰신설 등 관리강화 필요

일몰없는 항목 현황: 관리수준별



*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보유 정도에 따라, 모두 갖춘 경우 '적극적 관리대상', 일부 갖춘 경우 '잠재적 관리대상', 그 외 '구조적 지출'로 분류

자료 : NABO,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IV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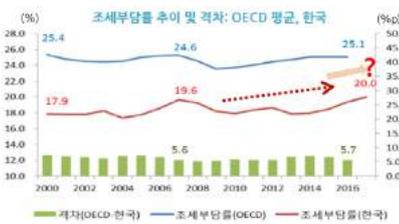
IV. 향후 과제

1. 최근 세수호조의 지속 여부 및 재정건전성 유지 점검

-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과세기반 축소(소득세, 소비세)
- 금리 및 유가 상승,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반 축소(법인세, 소득세)
-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안정성 저하(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세 대비 국세비중 감소 경향

2. 과세기반 확대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 모색

- 과세기반의 안정성이 높은 소득세수 비중 확대
- 보편세수로서의 부가가치세 기능 제고
- 개별소비세의 외부성 교정기능 강화
- 보유세제로서의 재산세의 고유기능 정립



조세부담률 추이 및 격차: OECD 평균, 한국

연도	OECD 평균 (%)	한국 (%)
2000	25.4	17.9
2002	25.4	17.9
2004	25.4	17.9
2006	24.6	19.6
2008	24.6	19.6
2010	24.6	19.6
2012	24.6	19.6
2014	25.1	20.0
2016	25.1	20.0



조세구조: OECD 평균, G7 평균, 한국(명목GDP 대비)

세종	한국 (%)	OECD 평균 (%)	G7 평균 (%)
소득세	4.6	6.4	9.0
법인세	3.6	2.9	2.0
소비세	7.4	11.0	8.0
재산세	3.0	1.9	3.0



우리나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및 격차 추이

연도	소득세율 (%)	법인세율 (%)	격차 (%)
2007	35%	25%	10%p
2009	35%	22%	13%p
2011	35%	22%	13%p
2013	38%	22%	16%p
2015	38%	22%	16%p
2017	40%	17%	23%p

자료 : OECD, Tax Database 등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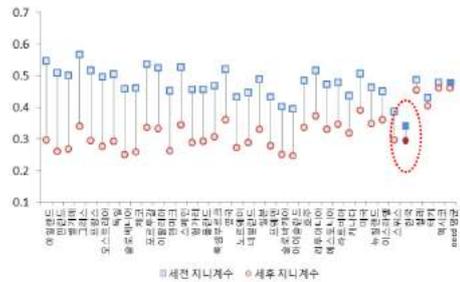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34

IV. 향후 과제

3. 기타: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

- 소득세의 면세자 비중, 평균유효세율 구조
- 서민·중산층 지원 관련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
- 과세구조 간소화를 통한 세원간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제고
- 비과세·감면제도 운용의 실효성 제고

세전·세후 GINI 계수: OECD, 2015년 기준



주: 1) 지니계수는 가구누적비율과 소득누적점유율을 연결하는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원전균등선) 사이의 면적비율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
 2) OECD의 지니계수는 '세전시장소득 - 직접세 - 사회보장기여금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감사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1

김 정 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2

추 경 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3

김 성 식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4

유 성 업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5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6

박 기 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문가 의견

I. 세법개정안에 대한 총평

□ 정부 조세개편안의 정책목표

- 소득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 청년 저축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 혁신성장

- 고용증대세제 일부 확대
- 신성장 R&D 지원 확대

□ 조세 합리화

- 에너지 세제 : 유연탄 인상, LNG 인하

□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5조원 감소

- 증가 요인
 - 종합부동산세 개편(+0.9조원) 등
- 감소 요인
 - 근로장려금(Δ 2.6조원), 자녀장려금(Δ 0.3조원) 등

〈연도별 세수효과: 억원〉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25,343	△32,810	5,621	△4,000	4,664	1,182

□ 세제 개편안보다는 지출 예산안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

- 세수 효과를 기준으로 하면 핵심적인 세수 변화 요인은 장려금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정부지출 성격
 -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그 규모가 1.2조원에서 3.8조원으로 2.6조원 증가

□ 세제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 그나마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대표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판단
 - 반면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미약한 상태이고 상호금융 등에 대한 비과세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 추가하면 에너지 관련하여 유연탄과 LNG의 세금 부담을 조정한 것

□ 결론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 초점이 환급형 조세 등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II. 세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장려금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각종 복지제도와와의 정합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소득세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 각종 이자소득 비과세는 부적절

-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

나. 부동산 세제

□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일부 인상한 점은 바람직

- 향후 공시지가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에는 가격 급등 등 투기의 요소가 불분명
 - 세율보다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공정한 방식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부유세 성격을 보유하고 있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비수도권, 비투기지역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과세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음

□ 임대보증금 과세는 이중과세 성격

- 임대보증금은 각종 자본소득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액 기준은 부적절한 방식

다. 고용 및 성장 관련

□ 혁신 성장의 대상을 정부가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직종과 무관하게 R&D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

□ 가속상각 또는 즉시 상각을 모든 분야에 허용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세이론에 따르면 법인 투자자금에 대한 정상수익률 차감의 효과를 보유

□ 기업환류세제 등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 대규모 조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세제를 단순화하는데 필요

라. 기타

□ 국내에서 소비되는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재정비가 필요해 보임

○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 납부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유연탄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LNG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

□ 인지세는 가능한 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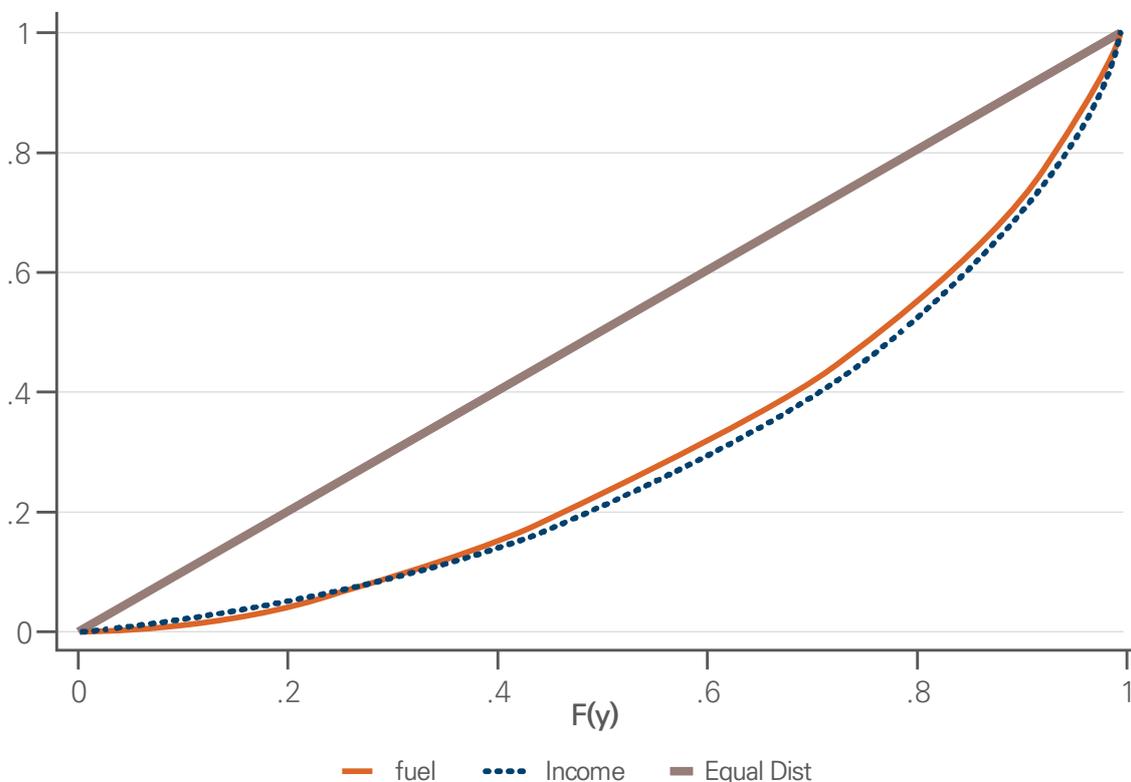
○ 필요하다면 수수료 받는 것이 합리적

□ 세수의 문제

- 올해의 경우에 대규모 세수로 재정수지가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
-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다르게 재정이 경기를 하락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세수 문제 측면에서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다만 조세 법률주의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른 일반적인 소비 품목보다는 고소득층이 많이 사용하지만 역진적이지는 않고, 거의 비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7

홍 인 기

대구대학교 교수

행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으로 설정하고,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3) 조세체계 합리화라는 큰 틀에서 세부정책을 제시하였다.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자 권익을 높이려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조세정책의 기본원칙들로 꼽히는 효율성, 형평성, 합리성, 그리고 성장과 고용 등의 사회적 필요성 중에서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과거 수년 간의 세법개정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 규모를 크게 늘리는 정책은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면서 정책대상과 혜택의 불확실성을 제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보조금(장려금) 지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과제에 대한 병행 대책이 미흡하다. 우선 노동과 소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므로 이와 유사한 직접 재정지출이나 조세지출을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들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투명한 재정점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지원으로 정책의 효과성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조세지출은 중복수혜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가 무척 어렵다. 예를 들면, 현재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개인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및 간이과세, 그리고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은 모두 조세지출의 형태로 특정 업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하지만 2016년 귀속기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58%에 달하는 65,638명 그리고 개인택시사업자의 17%인 28,081명이 이미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연평균 90~1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전체규모는 연간 879억원에 달한다. 조세지출의 정비를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므로 형평성 강화에 과도하게 치우칠 수 있는 세제개편의 균형을 복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행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은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에 크게 못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미흡하다.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을 담은 세제개편은 2000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이후 10년이 넘도록 3차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발전용 유연탄 세율인상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 등의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전반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에는 크게 미흡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에너지소비 규모는 2010년 이후 그 증가세가 주춤하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독일의 소비수준에 근접해 있고, 영국의 1.5배에 달하며, 프랑스보다도 높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영국의 2배에 달하고, 일본의 1.6배에 달한다. 석탄은 여전히 발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석유는 수송용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추상적으로 다가오던 수질 수치나 산림면적 등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과 조기사망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는 2009년 3월 「환경보건법」 시행 이후, 환경보건정책의 방향이 발생원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행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5년 12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을 통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정책 비전이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낼 때가 무르익었다. 에너지와 환경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결정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피구 조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세제에 반영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는 세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만큼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제개편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이미 10년 이상 미뤄진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포함한 에너지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이야말로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무려 15조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사용에서도 현행 구조를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세수의 80%를 무조건 도로·항만·철도 등 SOC 확충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서, 환경분야에는 15%만이 배정되고 있다. 이 비중을 크게 늘려 미세먼지 개선과 같은 수용체 중심의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출해야 할 때이다.

셋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한 만큼 국가재정에서의 책임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경감하는 조치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다수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조치는 면제자 비중을 높이고 이는 다시 납세의무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며, 고소득자 탈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한다면, 과세당국은 그에 준하는 납세의무를 중산층 이하의 납세자에게도 요구할 책임이 있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집단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것처럼 내야할 세금을 내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소폭 높이는 것은 영세 사업자에게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제자 집단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향후 조세행정에도 어려움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발간일 2018년 11월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8